

제3차산업경제위원회
2017.7.11(화) 10:00

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전문위원 유지영

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김인수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7년 6월 26일

나. 회부일자 : 2017년 6월 28일

3. 제안 이유

- 최근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,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축산농가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이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과 발생시 조기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가.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도지사 책무와 가축전염병 예방과 축사 소독 등 가축소유자 책무 규정(안 제3조, 안 제4조)
- 나. 가축전염병 예방 및 조기발견·신고체계 구축 등 관리대책 수립(안 제6조)
- 다.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 지원(안 제7조)
- 라. 가축전염병 예찰 및 방역을 위한 가축방역지원단의 설치(안 제8조)
- 마. 가축방역 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상(안 제9조)
- 바. 가축방역 사업의 분석과 평가(안 제10조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안'은 최근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,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축산농가와 지역 사회에 많은 경제적·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
- 이에 가축전염병 예방과 발생시 조기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은 타당함